

##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및 「아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5일

아 산 시 의 회 의장



### 1. 조례안 목록

조례안	발의의원	비고
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최재영 의원	
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미영 의원	
아산시 이·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홍성표 의원	
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안정근 의원	
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	김수영 의원	
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	이상덕 의원	

조례안	발의의원	비고
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안정근 의원	
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	최재영 의원	
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	맹의석 의원	
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미영 의원	
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	황재만 의원	
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	황재만 의원	
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이의상 의원	
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김희영 의원	
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	조미경 의원	
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	조미경 의원	
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조미경 의원	

※ 조례안 : 따로붙임 참조

## 2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·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기한 : 2019년 11월 20일(수)까지

#### 나. 의견 제출방법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 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 등
  - 3) 서면, 우편, 전자우편(pys9799@korea.kr), 팩스(041-540-2135)로 제출
  - 4) 의견 제출할 곳 : (우)31512/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(온천동)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(☎ 041-540-2905, 2628, 2705, 270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[불임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의 견	비 고